

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”를 “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메트로”로, “공사”를 “서울메트로”로 한다.

제2조, 제3조제1항 및 제2항, 제4조제1항, 제6조, 제7조제1항,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3항, 제10조제2항, 제11조,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, 제11조의3, 제11조의4, 제12조제1항,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3조의4,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, 제2항 및 제3항,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, 제1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, 제15조, 제16조제1항·제6항 및 제7항,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, 제1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3호, 제19조제1항, 제20조제1항, 제21조제1항, 제21조의2,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, 제23조, 제32조제1항,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중 “공사”를 각각 “서울메트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명칭은 이를 서울메트로로 본다.

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이를 서울메트로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서울메트로 사장

②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9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서울메트로에 관한 사항

③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제3항중 “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”를 “서울메트로”로 한다.

④서울특별시지하철3·4호선건설공사자금조달을위한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 단서중 “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”를 각각 “서울메트로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	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안전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하고,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